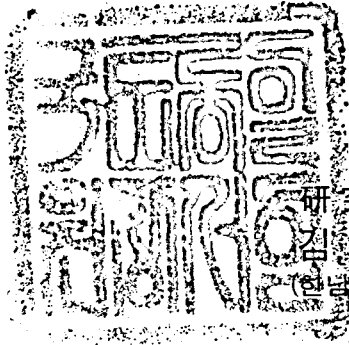


# 東·西獨 交易의 實務節次에 관한 研究

— 西獨側을 中心으로 —

1989. 11.



研究 責任者  
김 재 경  
(한양大學校 教授)

國土統一院



## 책을 내면서

최근 東歐의 自由化, 民主化 바람은 마침내 戰後 獨逸分斷의 象徴物이었던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 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社會主義 宗主國인 蘇聯의 改革·開放 政策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1950년대부터 持續적으로 蓄積되어 온 東·西獨間의 相互 交流·協力 結果가 크게 寄與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우리가 東·西獨 交易의 形態나 節次등에 관하여 關心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西獨의 對東獨 交易政策이나 節次가 우리의 對北韓 接近方式의 定型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어진 環境과 與件을 어떻게 利用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은 南北韓 經濟交流 推進에 좋은 教訓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冊子는 分斷國이면서도 40年 가까운 歷史를 가지고 있는 最近 東·西獨 交易의 實務的 側面을 紹介함으로써, 向後 南北韓間 經濟交流가 活性化되는 時期에 대비할 수 있도록 參考資料로 發刊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冊子가 南北韓의 經濟交流와 協力에 필요한 實務資料로서 널리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本文에 收錄된 內容은 반드시 當院의 公式的인 見解를 反映하는 것이 아님을 添言해 둡니다.

1989. 11.

調查研究室



# 차 례

〈요 약〉

머리말

I. 동.서독 경제교류의 법적 근거 .....	7
1. 베를린협정과 서방측 연합국의 점령법 .....	7
2. 동. 서냉전이 동. 서독 교역 실무절차에 끼친 영향 .....	9
II. 동. 서독 교역의 협상당사자와 거래당사자 .....	15
III. 상품교역 .....	18
1. 용어해설 .....	18
2. 서독측 반출절차(서독에서 동독으로 상품이동) .....	21
2.1. 문의처 및 담당부처 .....	21
2.2. 계약 성립 .....	21
2.3. 허가 절차 .....	22
2.3.1. 일반 허가품에 대한 반출절차 .....	23
2.3.2. 개별 허가품에 대한 반출절차 .....	28
2.4. 상품수송 .....	29
2.5. 부가가치세 輕減制度 .....	30
3. 서독측 반입절차(동독에서 서독으로 상품이동) .....	31
3.1. 일반 허가품에 대한 반입절차 .....	31

3.2. 개별 허가품에 대한 반입절차 .....	34
3.3. 부가가치세 減免制度 .....	36
4. 三角去來 .....	37
4.1. 일반 원칙 .....	37
4.2. 삼각반출 거래 .....	39
4.3. 삼각반입 거래 .....	40
4.4. 부가가치세 減免制度 .....	41
5. 仲介貿易 .....	42
IV. 대금결제 방식 .....	44
V. 동. 서독 교역과 借款制度 .....	49
VI. 동. 서독 교역과 보증제도 .....	52
VII. 동. 서독 경제교류의 특수형태 .....	55
1. 거래를 트는 일 .....	55
2. 라이프치히 산업박람회 .....	56
3. 상업목적의 동독여행 .....	58
VIII. 서독측의 국내시장 및 EC 시장 보호조치 .....	59
1. 반 덤핑제도 .....	59
2. 민감한 물품의 반입제한 제도 .....	61

IX. 감독 및 처벌 규정 .....	63
〈참고문헌〉 .....	64





## 〈요 약〉

동. 서독 교역을 규제하는 기본틀은 동. 서독간에 1951년에 체결되었고 1960년에 수정된 베를린협정이다. 동. 서독 교역은 전통적 의미의 대외무역도 아니고 순수한 국내교역도 아니라는 것이 서독측의 공식입장이다. 서독측은 지금까지도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 서독측의 동. 서독교역 실무절차에 구현되어 있다.

동. 서독 교역에 대해서는 서방측 연합국이 제정. 공포한 군정법 제53호가 아직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베를린협정은 동독 정부와 서독 정부간의 계약으로 두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고 서독의 국민에 대하여는 군정법 제53호가 구속력을 갖는다.

당초에 군정법 제 53호는 "허가 유보를 갖춘 금지원칙"에 입각하였다. 즉 동. 서독간의 경제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를 선별하여 허가하는 원칙이 채택되었다. 1955년부터는 동. 서독간의 상품교류에 대한 감독. 조절 권한은 서독의 연방 경제장관에게, 지급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권한은 서독의 중앙은행에 이양되었다. 동. 서독교역의 실무절차가 점차 간소화, 자유화되어 당초와는 달리 법적금지나 국가에 의한 규제가 예외로 되었고, 서독 기업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원칙으로 되었다.

정부 차원의 동. 서독 교역 당사자는 동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대외무역성이고 서독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민간단체인

상공신탁관리소이다. 서독의 연방경제성이 직접 동독의 대외무역성과 협상에 임하지 않고 막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상담을 개시하고 실제 거래를 시행하는 주체는 동독의 경우는 국영기업인 대외무역공사들과 기타의 무역회사들이고, 서독의 경우에는 유일무이하게 민간기업이다. 서독의 상공신탁관리소는 민간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동시에 통제하는 기능도 한다.

동. 서독 교역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허가된 물품(일반 허가품), 주무관청의 개별적 허가를 필요로 하는 물품(개별 허가품), 서독의 국내시장과 EC 회원국들의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물량제한이 책정된 물품(물량제한 물품), 군사적 관점에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대공산권 금수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서독의 연방경제장관은 1980년에 일반허가령 제1호를 통하여 40개의 허가면제 구성요건을 발표하였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40개의 경우에 상품의 이동(서독에서 동독으로, 또는 동독에서 서독으로)은 특정의 조건하에서 당국의 허가가 면제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물론 이 제도가 처음 채택된 것은 1968년이다.

동. 서독간의 상품의 이동은 지정된 장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물품수송 방법으로 철도, 육로, 내륙수로, 해상수송, 항공이 사용되고 있다. 또 동독에서 서독으로 반입되는 물품과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輕減 내지는 減免시켜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동독이 서독에 대해서 외국이 아니고 따라서 동. 서독교역을 대외무역으로 간주하지 않

는 서독의 정치적 입장이 구현된 제도이다.

동독과 서독간의 대금결제에는 두 나라의 중앙은행에 각각 상대방 명의로 된 청산계정을 설치하고 결제단위로는 장부상의 통화에 불과한 VE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청산계정은 상품교역을 위한 것과 용역교역을 위한 것, 현금결제를 위한 것의 3개로 나뉘어져 있다.

동독과 서독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자기나라에 반출한 만큼 상대방에 반출할 수 없는 사태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동. 서독교역은 당장 감소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 서독 쌍방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무이자로 자동대출을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를 스윙이라고 하며 모든 스윙합의에는 상한선이 설정되고 있다.

동독이 서독에서 借款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스윙 이외에도 판매자차관이나 재정차관의 방법이 있다. 동독측은 이러한 借款을 가지고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분할하여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선금지급과 중도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 서독의 연방정부는 서독의 기업들이 동독과 長期去來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증을 서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예를 들면 서독의 기업이 동독에 투자재를 공급하고 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정치적 사건이나 정부의 조치로 계약이행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이행하고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측에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동. 서독간의 경제교류에는 베를린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래도 있다. 삼각거래와 중개무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삼각거래를 통하여 서독측은 베를린협정에 규정된 VE가 아닌 자유통화를 가지고 상품을 동독으로 반출할 수도 있고 동독의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또 외국의 市場情報에 밝고 독일내 교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서독의 기업들이 중개무역의 방법으로 동독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서독의 중개상들이 제3국의 상품을 구입하여 동독에 판매하고 동독의 상품을 구입하여 제3국에 판매하고 있다.

동. 서독 교역에는 몇가지 특성이 따른다. 서독의 기업인이 동독측과 거래를 개시할 때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서독의 기업인이 사업목적으로 동독여행을 할 경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화폐의 양과 그 용도, 동독에서 사들인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 등이다. 또 일년에 2회씩 라이프치히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와 관련된 실무절차도 중요하다.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상품은 그것이 일반 허가품인가 개별 허가품인가에 따라 반출절차가 다르며 출품된 물품은 그곳에서 매각할 수 있다.

## 머 리 말

동. 서독 교역의 역사는 40년에 가깝다. 그 교역량도 1985년 현재 155억 DM에 이르렀다. 서독 마르크와 달러의 환율을 2:1로 잡을 경우 70억 달러가 넘는다. 동. 서독교역은 시간에 있어서나 물량면에서나 그 규모가 크다. 따라서 그 실무절차가 대단히 복잡하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동독과 서독 간의 정치적 관계가 변화하고 교역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 서독교역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를 일일이 추적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동. 서독교역 절차의 기본틀을 서술하고 80년대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남북한 경제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와 실무자, 후에 남북한 경제교류를 관장하게 될 주무관청, 이에 참여하게 될 기업인, 분단국 문제,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및 기타 관심있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 I. 동. 서독 경제교류의 법적 근거

## 1. 베를린 협정과 서방측 연합국의 점령법

동. 서독 간의 교역실시와 경제협력의 확대에 대한 법적근거는 1951년 9월 20일에 체결된 "베를린 협정"이다. "베를린 협정"은 그후 1960년 8월 16일에 약간 수정되었으며 당시 수정된 베를린 협정(이를 신 베를린 협정이라고 부른다)이 오늘날 까지도 동. 서독 간 경제교류를 규제하는 기본 틀로 되고 있다.

연합국들이 공포한 법과 서독의 국내법 원칙 및 국제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동. 서독 교역은 전통적 의미의 대외무역도 아니고 순수한 국내교역도 아니다. 미. 영. 불. 소 4개 戰勝國들은 독일을 전일체로 간주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합의사항에 따르면 동. 서독 교역은 국경선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성격의 상품교류이다. 1945년에 체결된 포츠담협정에서 전승국들은 장래에도 독일을 경제적 전일체로 간주하고 이 전일성의 유지를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照應하여 포츠담협정을 보장하는 강대국들과 서독정부는 지금까지 동. 서독 교역의 특수성을 회색시키고 이를 보통의 대외무역으로 변화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여 대항하여 왔다. 동. 서독 교역을 다른 의미로 평가한다든가 다르게 분류하는 것은 서독헌법이나 서독정부의 동방정책과 독일정책의 기본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다.

동. 서독 교역은 1961년 4월 28일에 통과된 "대외경제법"

(Aussenwirtschaftsgesetz) 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대외경제법"은 무역정책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의 모범을 지향하는 것으로 서독이 전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이다. 반면 동. 서독 교역의 실시를 규정하는 법규범들은 아직도 점령기간 동안 서방측 연합국들(미. 영. 불)이 그들 점령지역과 동유럽나라들 간의 경제관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포한 법규에 근거하고 있다.

1961년에 "대외경제법"이 통과됨으로써 그때까지 유효하던 상품과 용역의 수출입, 국가간 지급거래와 자본거래 및 외환거래를 행정적으로 규제하는데 쓰이던 연합국들의 모든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에 반하여 동. 서독 교역에 대해서는 오늘날 까지도 군정법 제53호(Militaerregierungsgesetz Nr. 53)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 법에 따르면 동독과 서독 간의 모든 교역은 일반적(강압적) 금지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즉 동독과 서독 간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거래, 용역거래, 외환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이 법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서방측 국가기관이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예외이다. 허가유보를 갖춘 금지원칙이라고 하겠다.

군정법 제53호에 근거하여 1955년부터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상품교류를 감독하고 조절하는 권한이 서독의 연방경제 장관(Bundesminister fuer Wirtschaft)에게 이양되었고 상업용. 비상업용을 막론하고 지급거래와 자본거래(동독 지폐로 결제되는



교역 포함) 실시를 허가하는 권한은 서독중앙은행(Deutsche Bundesbank)이 행사하게 되었다.

군정법 제53호의 허가유보와 관련하여 벌써 60년대에 "일반허가령"(Allgemeine Genehmigungen)을 발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종류의 교역행위와 지급형태가 강압적 금지, 개별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 기타 수많은 행정상의 부대조건이행 의무로부터 해방되었다. 상품교환의 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업용 지급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서독 중앙은행이 "일반허가령"을 발함으로써 법적규제는 크게 완화되어 군정법 제53호가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즉 동. 서독 교역과 관련하여 교역행위에 대한 법적금지나 국가의 규제가 예외로 되었고, 기업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관행으로 되었다. 이는 물론 서독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2. 동. 서冷戰이 동. 서독 교역 실무절차에 끼친 영향

동. 서冷戰 시기에 서방측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하여 수출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이 수출금지규정은 서방측 군사동맹의 안보이익과, 개별국가 및 민간기업의 상업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개별국가와 민간기업은 사회주의국가에 가능한 한 많이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고 군사동맹의 안전보장을 책임맡은 사람들은 서방측의 수출품이 사회주의 진영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이를 규제, 제한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국제 환경속에서 동독정부와 서독정부간의 합의를 본 교역상품목록이 1961년까지는 주기적으로 재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주기적 검토의 방법으로 동. 서독 쌍방은 冷戰이 침체화 되는 경우에, 체결된 계약을 위반함이 없이도, 전에 합의를 본 교역상품의 종류를 삭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61년 1월 1일부터는 신 베를린협정(1960년 8월 16일 체결)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고 그 이래로는 한번 결정된 상품목록은 무기한으로 유효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품목록이 더 이상 주기적으로 검토,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0년대 중반이래 상품목록은 단지 비정기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이 경우의 검토는 정치적 의도에서라기 보다는, 다만 현존하는 상품목록이 그동안 변경된 반입가능성과 반출가능성에 아직도 照應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그 위에 상품목록이 동. 서독 쌍방의 새로운 구매자 요구에 어느정도 순응하여야 할 것인가도 조사되었다.

50년대와 60년대 초에는 원칙적으로 서독내에서는 동독과의 모든 거래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부터는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교역실무의 간소화가 결정되었다. 허가기관의 업무를 덜고 상품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서독 연방정부는 1968년과 1969년에 동독과의 반출, 반입거래의 이행절차를 훨씬 비관료적으로 새로이 마련하였다. 새로운 절차는 이미 1969년부터 적용되었다.

독일내 경계선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상품의 흐름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조정이 그때부터 다음과 같이 간소화되었다. 더 많은 수의 교역상품을 별도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반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허가된" 교역물품으로 분류되었다. 이때부터 이 집단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送荷許可書(Warenbegleitschein)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허가는 해당 물품의 이전이 서독의 책임있는 신고관청에 신고된 순간에 나온 것으로 간주되었다. 신고관청으로는 연방제조업청(Eschborn 소재)과 연방식품·임업청이 있다.

"일반적으로 허가된" 상거래와는 달리 선별된 소수집단의 물품에 대해서는 허가 의무가 존속되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물품은 현재도 서독 당국의 반출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필요로 한다.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하여 가격기준 또는 수량기준 물량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상품이 이 범주에 속한다(물량제한 물품). 그밖에 물량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으나 국가정책적 이유에서 구매나 판매를 규제하는 물품집단이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물품은 서독정부의 명시적인 허가가 있어야만 동독으로 반출이 되고 또 동독으로부터 반입이 가능하다.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교역대상으로 될 수 없는 공산품이 있는 바, 군사정책적 견지에서 수출금지품목에 포함된 물품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1969년 이래 서독측에는 동. 서독 교역과 관련하여 선별임무와 조절임무를 담당하는 2개의 행정적 여과장치

가 존재하는 셈이다. 종전에는 주로 상품목록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선별임무와 조절임무가 수행되었었다. 2가지 여과장치는 다음과 같다: (가) 선별된 일부 교역상품의 경우 반출과 반입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제도 (나) 숫적으로 적은 집단의 개별생산물과 물품종류의 경우 가격기준과 수량기준 물량제한 제도.

이상의 간소화 조치가 취해진 3년 후에, 즉 1972년부터 1974년 사이에, 전체 동. 서독 교역의 60%내지 70%가 서독 경제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실시되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반입되는 경우 무허가 구매의 비중은 더 컸다. 1973년부터는 동독측과 체결한 구매계약의 75% 이상이 서독정부 당국의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951년의 베를린 협정과 1960년의 신 베를린 협정은 교역대상이 되는 전체 상품과 공장설비를 2개의 재화집단으로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집단에는 국민경제상 특별히 중요한 모든 생산물(하드웨어), 즉 광산물, 석유제품, 강철제품, 기계와 투자재가 속하였다. 둘째집단에는 주로 농산물, 생필품, 공산소비재, 섬유, 의류, 약기, 장난감이 포함되었다(소프트웨어).

이와 같은 교역물품의 二分法(용역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과 일치하게 서독중앙은행(Deutsche Bundesbank)도 모든 반출거래와 반입거래를 제1집단 생산품과 제2집단 생산품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제1집단 소속 상품교환은 소계정1(Unterkonto I)을 통하여, 그리고 제2집단 소속 상품교환은 소계정2(Unterkonto II)를 통하여 청산되었다. 이렇게 분리결제를 함으로써 서독측은

동독과의 교역수지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1967년에 서독 중앙은행은 소계정1과 소계정2를 소계정1/2 (Unterkonto 1/2)로 통합 운영하였는바 이때부터 모든 상품교역의 결제는 소계정 1/2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70년대 중반부터는 상품반입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가격기준 또는 수량기준 물량제한 없이 서독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수의 상품종류를 동독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제조업 부문의 교역대상 상품의 신고번호가 5246개 단위가 되는데 1986년 현재 이 중에서 99%가 수량기준 제한이나 가격기준 제한없이 동독으로부터 구입되었다. 즉, 5246개 상품단위 중에서 55개 단위만이 물량제한의 대상으로 규제를 받았다. 이 정도로 동. 서독 교역이 국제정세의 완화의 덕택으로 자유화되어 있다.

동독과 서독 간에는 베를린협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두 나라의 기업이 생산한 물품만이 교환될 수 있다. 이를 원산지 의무라고 한다.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교역은 동. 서독 양측이 특수생산물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를 봄으로써 이를 허용한 경우에만 허가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독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서독측에 신청한 바가 없다. 즉 지금까지 동독으로부터 외국산 상품이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 하겠다.

이와는 달리 서독측은 1981년부터 1986년 사이에 매년 4억 내지 8억 VE(DM)에 해당하는 량의 외국산 상품을 동독에 공급하였다. 이 중에서 80% 이상이 대개의 경우 原油였다. 이와 같은

외국산 물품 구입에 동독의 경제부처는 80년대 전반기에 큰 관심을 가졌었다. 그 당시 원유가공과 원유제품 판매는 동독측에게는 최고로 수익성이 높은 외환 수입원이 되었었다. 서독측은 동독측의 재수출 정책을 관대히 받아들였는데, 이는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서베를린시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유거래 결과 1981년부터 1986년 사이에 서독측이 동독측에 판매한 외국산 물품은 전체 판매량의 최저 5% 최고 13%에 이르렀다.

## II. 동. 서독 교역의 협상당사자와 거래당사자

동. 서독 교역의 서독측 협상당사자는 상공신탁관리소(Treuhandstelle fuer Industrie und Handel)이다. 1981년까지는 그 명칭이 지역간 교역신탁관리소(Treuhandstelle fuer den Interzonenhandel)였다. 상공신탁관리소는 서독의 연방정부와 서베를린 市議會로부터 동. 서독 교역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서독측의 이익을 대표하며, 동독측의 경제부처와 항시적으로 접촉을 유지하고 협상을 진행시키며 합의에 도달할 것을 위임받고 있다. 그 자격은 서독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독일상공회의소의 한 부속기관이며 소재지는 서베를린이다.

동. 서독 교역의 성격에 조응하여 상공신탁관리소는 서독의 외무성이 아니라 경제성의 관할 하에 있다. 경제성 내에서도 대외경제국이 아니라 국내경제문제를 담당하는 제조업국이 상공신탁관리소를 관할한다. 이는 동. 서독 교역이 대외무역이 아니라는 기본원칙의 표현이다. 1972년 기본조약체결 이후 서독의 상설대표부가 동베를린에 설치되었는데 이 상설대표부에는 교역정책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서독의 모든 큰 규모의 외교대표부가 무역정책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베를린 주재 상설대표부의 경제담당관은 무엇보다 경제동향분석과 접촉시도의 임무를 띠고 있다.

대동독 상거래의 길을 열고 실제 거래를 실현하는 주체는 서독의 경우 유일무이하게 민간기업(자연인, 법인 포함)이다. 상공신

탁관리소는 첫째로 민간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동. 서독교역이 주어진 법적, 국제적 기본틀과 일치하게 진행되는 가를 통제하는 권한도 상공신탁관리소에 부여되어 있다. 동. 서독 교역이 잡음없이 진행되고 이해 충돌을 세련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독정부의 수입자인 상공신탁관리소 소장과 동독 대외무역성 대표가 매주 또는 2주일에 한번씩 회동하여 왔다. 한번은 서베를린에서 다음번에는 동베를린에서 회동하며, 그 밖에 박람회나 다른 기회에 만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소비에트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독도 國營 교역 국가이다. 전반적으로 대외경제관계가 중앙정부의 조정하에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권력정치적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 소유와 국가의 대외무역 독점이다. 이는 대외무역이 오로지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으며 국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동독은 하나의 국가기관, 즉 대외무역성을 설치하고 대외무역의 집중관리와 계획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의 규모, 구체적인 판매시장과 구매시장이 국가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확정된다. 모든 대외무역의 집행은 하나의 통제. 허가기관에 의하여 엄격히 조정된다. 국가에 의한 대외무역독점은 국가가 외환관리를 독점하고 대외무역 관련 수송과 보험까지도 독점함으로써 완벽하게 된다.

동. 서독 교역의 동독측 협상당사자는 대외무역성이다. 대외무역성은 동독내의 모든 대외무역기관의 지도기관으로 대외무역정책의 통일적 계획, 지도, 집행, 감독을 보장하고 주기적으로 국제



수지의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수출과 수입을 조정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 및 동. 서독교역과 관련하여 대외무역성은 국가계획위원회, 工業省들(동독에는 현재 10개의 공업성이 있음), 대외무역공사들과 항상 협력을 하고 있다.

서독의 기업과 상품교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동독측 당사자는 대외무역성이 아니고 대외무역공사들(Aussenhandelsbetriebe)이며 그 밖에 무역회사들도 있다. 그러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대외무역공사들로 1986년 이래 61개의 대외무역공사가 있다. 이들 중에는 대외무역성의 관할하에 있는 것도 있고, 공업성들과 콤비나트(생산기업체)의 관할하에 있는 것도 있다. 이들은 모두 자치적인 기업체가 아니고 국가기관이다.

### Ⅲ. 상품교역

#### 1. 용어해설

동. 서독 교역의 실무절차에 대한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 반입과 반출

서독의 상품이 동독으로 공급되는 것을 서독측은 대외경제법이 정하는 의미의 수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동독의 상품이 서독으로 공급되는 것도 서독측은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독측은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를 반출(Lieferung)이라고 부르고 수입에 해당하는 거래를 반입(Bezug)이라고 부른다.

##### - 서독과 동독의 의미

여기서 서독이라고 할 때는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을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고 동독이라고 할 때에는 독일민주공화국과 동베를린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서베를린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일부가 아니고 동베를린 역시 독일민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서베를린은 서독에, 동베를린은 동독에 포함시켜서 사용한다.

##### - 삼각거래(Dreiecksgeschaeft)

삼각거래는 서독의 자연인이나 법인과 동. 서독을 제외한 제3국의 자연인이나 법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1) 상품이 서독으로부터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하여 동독으로 이동되거나 (2)

상품이 동독으로부터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하여 서독으로 이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면 서독의 A라는 기업과 벨기에의 B라는 기업간에 첫째 서독의 상품을 직접 동독으로 수송하거나 벨기에를 경유하여 동독으로 수송하기로 합의한 거래, 둘째 동독의 상품을 직접 서독으로 수송하거나 벨기에를 경유하여 서독으로 수송하기로 합의한 거래가 삼각거래이다. 이 경우에 동. 서독 간에는 직접적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수탁가공거래와 위탁가공거래

수탁가공거래란 동독의 상품을 서독의 수탁자가 대금을 받고 가공(수리, 수선 등)한 후에 다시 동독으로 반송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독의 자연인이나 법인과 동독의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를 말하며, 능동적 가공(aktive Ausbesserung)으로도 번역된다. 위탁가공거래란 서독의 상품을 동독의 수탁자가 역시 대금을 받고 가공(수리, 수선 등)한 후에 다시 서독으로 반송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독의 자연인이나 법인과 동독의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를 말하며, 수동적 가공(passive Ausbesserung)으로도 번역된다. 수탁가공거래와 위탁가공거래를 합하여 임가공거래(Lohnveredelungsgeschaeft)라고 한다.

－ 중개무역거래(Transithandelsgeschaeft)

이에 관해서는 베를린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동. 서독교역과 관련하여 중개무역거래란 (1) 서독의 자연인/법인이 베를린협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동독의 거래당사자로부터 상품을 취득하여 제3국의 개인/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2) 서독의

자연인/법인이 역시 베를린협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제3국의 자연인/법인으로부터 서독영토 밖에 위치하는 상품이나 이미 서독영토 내에 위치하더라도 아직 통관절차를 받지 않아 자유로운 유통이 허가되지 않은 상품(예: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을 취득하여 동독의 거래당사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3) 상품의 취득자와 상품의 매각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한다.

－ 대체반출과 대체반입

대체반출(Ersatzlieferungen)이란 (1) 부품교체청구권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대금을 받지 않고 실행되는 반출과 (2) 서독 당국의 허가를 받고 동독으로 반출된 상품을 무상으로 수리, 수선한 후에 이루어지는 반출을 의미한다. 대체반입(Ersatzbezeuge)이란 (1) 부품교체청구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대금을 받지 않고 실행되는 반입과 (2) 서독 당국의 허가를 받고 동독에서 사들인 상품을 무상으로 수리, 수선하게 한 후에(예: 보증기간내의 수리) 이루어지는 반입을 말한다.

－ 반송품(Rueckwaren)

반송품이란 (1) 서독 당국의 허가를 받고 동독으로부터 반입되었으나 하자를 이유로 또는 계약서에 유보된 권리에 기초하여 서독의 수취인이 반송시키는 상품과 (2) 서독 당국의 허가를 받고 동독으로 반출되었으나 하자를 이유로 또는 계약서에 유보된 권리에 기초하여 동독의 수취인이 반송시키는 상품을 말한다.

## 2. 서독측 반출절차(서독에서 동독으로 상품이동)

### 2.1. 문의처 및 담당부처

동. 서독 교역과 관련된 모든 발표는 서독의 경제성이 연방관보(Bundesanzeiger)에 게재하고 있다. 동. 서독 교역에 사용되는 모든 서식은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나 서식판매점에서 구할 수 있다. 동. 서독 교역에 관한 정보는 서독의 11개주에 설치된 경제담당부처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문의사항별 담당부처는 다음과 같다.

절차문제 : 연방제조업청 (Eschborn 소재)

전문성있는 문제 : 연방식품. 임업청 (Frankfurt 소재)

통관절차 문제 : 세관 (각 지역 소재)

세금관계 : 세무서 (각 지역 소재)

상품분류 문제 : 연방통계국 (Wiesbaden 소재)

### 2.2. 계약성립

동독측 계약당사자에 관한 정보, 즉 기업명칭, 취급상품, 주소, 전화번호 등을 서독의 해당기관과 경제단체가 유인물로 공시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동독의 대외무역공사가 계약당사자로 등장한다. 실제로 동독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기업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서독 기업들에게 주의를 준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일반 허가품의 경우나 개별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의 경우를 불문하고 필요하다. 계약은 다음의 4가지로 구별된다.

- (1) 非長期계약 : 상품반출이 해당 연도말까지나 다음해 1/4분기까지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 (2) 長期계약 : 非長期계약보다 더 긴 시간내에 상품반출이 실시되는 경우이다.
- (3) 外延性계약 : 여러 件의 상품거래와 용역거래를 대상으로 하나 차후에 구체적 개별계약들로 채워지는 계약이다.
- (4) 包括性계약 : 이미 모든 계약의 속성을 갖추었으나, 다만 상품의 종류가 아직 특화되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들면 추후에 구매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우선은 100,000 VE에 해당하는 생필품과 음료수를 공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 상품종류, 수량과 가격, 대금지급방식(예: 소계정 1/2를 통한 결제인가 또는 특별계정 S를 통한 결제인가), 서독측 반출자, 동독측 반입자, 대금지급 기한, 상품인도 시기, 계약번호(다른 계약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임). 계약관계서류는 동독의 구매자가 서독의 반출자에게 넘겨주는데 계약서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3. 허가절차

50년대와 60년대 초에는 원칙적으로 동독과의 모든 거래가 허

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그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독 정부는 일반허가령을 발하여 점점 더 많은 상품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되도록 동. 서독 교역을 자유화 시켰음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허가절차와 관련하여 서독의 경제성이 발한 일반허가령으로는 현재 다음의 3가지가 있다.

- (1) 일반 허가령 제1호 [Allgemeine Genehmigung Nr. 1, 약칭 AG 1]
- (2) 일반 허가령 제2호 (반출관련) [Allgemeine Genehmigung Nr. 2(L), 약칭 AG 2(L)]
- (3) 일반 허가령 제3호 (반입관련) [Allgemeine Genehmigung Nr. 3(B), 약칭 AG 3(B)]

위의 3가지 일반 허가령은 1980년 7월 4일부로 연방관보의 부록(1980년 8월 8일자 제 145호)에 발표되었고 그 후 수차에 걸쳐서 수정되었다. 이들 허가령에 의하면 반출절차는 일반적으로 허가된 상품, 즉 "일반허가품"에 대한 것과 개별적으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 즉 "개별허가품"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 2.3.1. 일반 허가품에 대한 반출절차

일반 허가품에 해당되는 상품의 범위는 일반 허가령 제1호 (AG 1)와 일반 허가령 제2호 [AG 2(L)]에 명시되어 있다. 일반 허가령 제1호는 상업적 성격과 비상업적 성격의 구성요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상품의 이동을 규제한다. 일반 허가령 제1

호에는 40개의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청산계정 1/2를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며 계약서상의 가격이 200 서독마르크 이하인 상품 (예를 들면 상품 전본의 반출).
- 매매의 대상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내에 본질적인 변경없이 다시 서독으로 이송되어야 할 수송수단 및 그 부속물과 적재수단 (예 화물자동차 또는 수송선), 그리고 수송 수단위에 함께 운반되며 (1) 해당 수송 수단의 장비, 가동, 유지, 수선을 위한 상품이거나 (2) 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상품이거나 (3) 여행하는 동안에 소비하기 위한 상품(연료, 승무원용 식품 등)이거나 (4) 여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상품(여객선이나 관광버스의 여객에게 판매할 물품).
- 포장수단과 우리(짐승을 운반할 경우), 컨테이너, 기타의 대형용기, 파레트,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고압용기, 케이블통, Kettbaum. 이들 상품은 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동물 수송시 동물을 위한 사료와 건초. 이 경우 종류와 수량은 수송 기간동안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요와 일치하여야 한다.
- 동독과 서독내에서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도중에 정비, 점검의 필요성이 발생한 육상, 수상, 공중의 차량을 수선하고 정비하기 위한 상품.
- 조립공구와 부품류. 이들 상품은 수선, 수리의 목적으로 운



송되었다가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않게 되면 다시 반송되어야 한다.

- 서독의 자연인이 동독의 자연인에게 보내는 5000 마르크 이하의 선물. 선물을 발송하기 전에 선물을 받는 동독의 사람은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필요한 수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동독측의 수입허가 없이는 선물을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서독의 철도청은 동독측의 수입허가서가 없는 물품 발송은 대개 접수하지 않는다.
- 상품광고나 상품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선물. 매번의 여행시나 발송시에 2000 마르크 범위내에서 선물의 종류와 수량이 적절한 한도내 이어야 한다.
- 상품의 품질을 특징지우거나 품질검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대금을 받지 않는 견본과 시험용품.
- 전람회, 박람회, 회의나 대회에서 展示臺를 꾸미기 위한 상품이나 광고와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 전람회나 박람회용으로, 또는 무료의 시험용이나 견본용으로, 또 대여의 목적으로 반출, 반입되었다가 다시 반송되는 상품.
- 다시 서독으로 반송된다는 조건하에 반출되는 공사장 시설물 (예 기계, 차량, 공구).
- 이주재산, 상속재산, 혼수품.
- 대학, 연구원이나 기타의 학술 기관의 교환거래나 대여거래의 틀 안에서 발송되는 출판물과 서독의 특허청과 동독의 특

허청 간에 교환되는 특허설명서.

- 동독의 라이프치히 소재 독일도서관과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도서관을 위한 무료로 제공되는 신판의 서적.
- 상호 교환되는 동물.
- 어획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각각 상대방 지역의 수역에서 잡은 물고기.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은 개별적 허가 없이 즉 송하허가서 (Warenbegleitschein) 없이 동독으로 이동된다. 이 경우 상품이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증서는 필요없고 다만 육상의 경우는 운송장, 해상의 경우는 선하증권 등이면 족하다. 구체적으로 서독의 한 수출상이 자기가 동독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상품이 일반 허가령 제1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세관원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그 동안 주고 받은 서신, 반출관련증서 등을 통관수속 당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상품이 운수업자를 통해서 반출될 때에는 서독의 수출상은 운송장이나 선하증권 상에 해당 상품이 일반 허가령 제1호 몇조 몇항 몇번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허가된 것인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일반 허가령 제2호 부속문서 제1호에는 일반 허가품에 해당되는 수많은 상품들이 6자리 숫자의 통계용 신고번호를 가진 종류로 세분되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상품의 종류는 수천개에 달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상품의 신고번호는 서독의 무역통계에서 쓰이는 상품기호가 아니고 생산통계에 사용되는 물품표기 방식에 따른 것이다. 동. 서독 교역을 대외무역으로 간주하지 않

는 서독의 정치적 입장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하겠다.

일반허가품이 반출되는 경우는 다음의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매매계약, 공장 공급계약에 기초한 반출 또는 베를린협정에 따른 능동적 가공을 마친 후의 반출
- (2) 베를린협정에 의거하여 수동적 가공을 위한 상품의 반출
- (3) 삼각거래에 기초한 반출
- (4) 베를린협정에 의거하여 허가된 용역계약에 기초한 반출
- (5) 전람회 전시품, 박람회 전시품, 시험용품, 견본, 대여상품의 반출
- (6) 대체반출
- (7) 반송품의 반출

이 범주에 속하는 상품은 일반 허가령 제2호 제3조에 규정된 제조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시킬 경우에만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 제조조건 가운데 한가지만 갖추지 못하여도 개별적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

- (1) 반출자는 서독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 (2) 반입자는 동독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 (3) 상품은 서독에서 취득되었거나 제조되었어야 하고 관세법상 그 거래가 자유로워야 한다.
- (4) 반출은 어떤 상품반입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는 대금지급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相互主義 거래는 금지된다.

- (5) 두 계약당사자간에는 상품반출 후 1년을 초과하는 대금 지급 유예기간이 합의되어서는 안된다.
- (6) 상품 대금지급이 계약내용으로 보아 판매자가 그의 다른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역시 相互主義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 (7) 두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24개월 보다 더 긴 상품 인도 기한에 합의해서는 안된다.
- (8) 상품은 허용된 통과지점을 통해서만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동될 수 있다.

제3조의 제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순간에, 즉 두 계약당사자 중에서 마지막 당사자까지 서명한 순간에(당국의 다른 행정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반출허가가 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허가된 반출거래의 경우 계약 쌍방이 합의한 상품의 수량과 가격이 5% 한도 내에서 당초에 계약한 것보다 초과되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해당상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 송하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3.2. 개별 허가품에 대한 반출절차

일반 허가령 제1호와 일반 허가령 제2호 부속문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 및 일반허가령 제2호 부속문서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 허가령 제3조의 제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의 상품을 동독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송하허가서의 형태로 개별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송하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해당 주정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계약쌍방이 서명한 계약관계 서류 일체를 2부 첨부하여야 한다.

개별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 종류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금을 받기로 하고 상품을 동독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외에 몇가지가 더 있다.

- (1) 외국상품을 동독으로 반입하는 경우
- (2) 상품을 동독 경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 (3) 대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상품을 동독으로 반출하는 경우
- (4) 임가공 거래가 개별적 허가를 필요로 하는 거래에 속한다.

#### 2.4. 상품수송

베를린협정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거래 관련 상품은 법령에 정해진 장소를 통해서만 반출되고 반입된다. 외국상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수송방법에는 철도, 육로, 내륙수로, 해상수송, 항공, 베를린 시의 경우 지정된 통과지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철도수송을 위해서는 8개의 역, 육상수송을 위해서는 6개의 지점, 내륙수로 수송을 위해서는 3개의 지점, 해상수송을 위해서는 5개의 항구, 항공수송을 위해서는 9개의 공항이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경계선에도 몇 개의 통과지점이 설치되어 있다.

반출되는 상품은 관계서류와 함께 해당 통과지점의 세관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상품을 반출자가 직접 수송하지 않고 계약서에 합의된 대로 운수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동독측은 자체의 교통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을 수송하고자 한다. 서독의 화물자동차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가 수송목적으로 동독내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가되어 있다.

## 2.5. 부가가치세 輕減 制度

서독의 기업인이 베를린협정에 의거하여 동독의 법인에게 상품을 반출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輕減의 혜택이 배풀어 진다. 현재 서독내에서 판매되는 상품가격에는 14%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에는 14%의 부가가치세 전액이 면제된다. 즉 서독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은 14%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게 된다. 실제로는 외국인이 먼저 서독 국내시장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해당 상품이 서독의 통관 절차를 완료한 후에 14%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서독정부의 공식 입장에 의하면 동독은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14%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는 없고 그 대신 6%와 3%의 세율이 동독으로 반출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각각 서독의 물품세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함. \*12 Abs. 1 und 2 UStG).

동독으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나 계산서에 부가가

치세를 별도로 표기하면 동독의 계약당사자가 세금지급을 거절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상품의 매매가격에 포함시켜서 표기한다. 이 경우 동독의 계약당사자는 부가가치세를 인식못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분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서독 상공회의소의 입장이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동. 서독 교역에 참여하는 서독의 기업은 사전에 자기 거주지역의 세관에 문의할 것이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다.

### 3. 서독측 반입절차 (동독에서 서독으로 상품이동)

서독측 반출절차 항목에서 기술한 "문의처 및 담당부처",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은 서독측 반입절차에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은 생략한다. 또 "상품수송"문제도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도 생략한다. 동독으로부터 반입되는 상품도 일반 허가품과 개별 허가품으로 구분된다.

#### 3.1. 일반 허가품에 대한 반입절차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의 범위는 일반 허가령 제1호(AG 1)와 일반 허가령 제3호[AG 3(B)]에 명시되어 있다. 일반 허가령 제1호는 상업적 성격과 비상업적 성격의 구성요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상품의 이동을 규제한다. 여기에 속하는 상품의 집단은 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0종류나 된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가지는 위에서 열거하였다. 이들 상품은 서독 정부의 허가없이 동독으로부터 반입된다.

일반 허가령 제1호에 근거하여, 전람회나 산업박람회를 위하여, 무료시험용이나 견본용으로, 혹은 대여목적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상품은, 적절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반드시 동독으로 반송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만 반입이 허용된다.

1986년 3월 1일부터는 동독으로부터 제3국을 경유하여 서독으로 이송될 우표는 다음의 경우에 일반 허가품으로 된다.

- (1) 해당우표의 발행일과 그것이 제3국을 경유 서독으로 반입될 시점 간에는 2년을 초과하는 시차가 존재할 것.
- (2) 해당우표가 상거래의 관행처럼 대중상품으로서 동독에서 발행되지 않은 우표와 혼합되어 있고(우표소포상품), 동독에서 발행된 우표의 가치가 우표소포상품 전체가치의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반입물품이 일반허가령 제1호에 해당되는 일반 허가품이라는 점을 세관원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는 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독의 수입상은 계약서, 그동안 주고 받은 서신, 전보 등을 통관 수속 당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상품이 운수업자에 의해서 수송될 경우에는 동독의 판매자는 운송장이나 선하증권에 해당 상품이 일반 허가품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예 : "상품견본" 또는 "선물").

일반 허가령 제3호의 부속 문서 제1호에는 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허가품에 해당되는 수많은 상품들이 6자리 숫자의



통계용 신고번호를 가진 종류로 세분되어 수록되어 있다.

일반허가품이 반입되는 경우는 다음의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매매계약, 공장 공급계약에 기초한 반입 또는 베를린 협정에 따른 수동적 가공을 마친 후의 반입
- (2) 베를린협정에 의거하여 능동적 가공을 위한 상품의 반입
- (3) 베를린협정에 의거하여 허가된 용역계약에 기초한 반입
- (4) 대체반입
- (5) 반송품의 반입
- (6) 전람회 전시품, 박람회 전시품, 시험용품, 견본, 대여상품의 매입
- (7) 부품종류에 속하는 상품의 매입

이 범주에 속하는 상품은 일반 허가령 제3호 제3조에 규정된 제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만 일반 허가품으로 된다. 제3조의 제조건 가운데 한가지만 갖추지 못하여도 개별적 허가를 받아야 함은 반출의 경우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

- (1) 반출자는 동독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 (2) 반입자는 서독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 (3) 상품은 동독에서 취득되었거나 제조되었어야 한다. 상품의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원은 원산지 증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 (4) 반입은 어떤 상품반출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는 대금지급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 역시 相互主義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 (5)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계약은 제3국 사람의 계산으로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 (6) 상품 대금지급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판매자가 그의 다른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역시 相互主義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 (7) 두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24개월 보다 더 긴 상품인도 기한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
- (8) 상품은 허용된 통과지점을 통해서만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동될 수 있다.

일반 허가품을 반입할 경우 반입 행위는 서독 기업의 책임하에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상품 반입이 일반 허가령 제3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가능하고 허가된 것인지를 양심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처에 반입허가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또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상품의 수량과 가격이 5% 한도내에서 당초에 계약한 것 보다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 3.2. 개별 허가품에 대한 반입절차

대금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상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일반 허가령 제3호의 부속 문서 제1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동 허가령에 규정된 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서독 당국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독의 기업은 "주정부 관계부처"에 "반입허가 발급 신청서"라는 서식을 사용하여 반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상품을 반입하는 경우 이외에도 개별적인 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몇가지 더 있다.

- (1) 무상으로 상품을 동독에서 반입하는 경우 (예: 동독 기업이 제공한 선물).
- (2) 라이프치히(Leipzig) 모피 경매 거래. 최근에 와서 서독의 기업이 라이프치히 모피 경매 시장에서 VE가 아닌 자유통화를 지급하고 동독의 모피회사인 Interpelz Leipzig로부터 외국산 모피를 구입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 경우는 반입허가가 필요하다.
- (3) 삼각거래에 의거한 반입거래.
- (4) 동독에서 외국상품 (예를 들면 헝가리 산 거위와 오리)을 취득하여 서독으로 반입하는 경우
- (5) 동독산 상품을 제3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 (예: 동독의 강철제품을 구입하여 리비아로 수출하는 경우).
- (6) 임가공거래. 수탁가공거래의 경우나 위탁가공거래의 경우나 공히 서독 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 (7) 동독 상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베를린협정에 의하면 동독에서 반입한 상품은 공산품의 경우에는 무관세로, 농산품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EC 회원국으로 재수

출 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 혹은 한시적인 재수출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 예를들면 섬유 제품, 수렵용 총기, 목제나사가 재수출금지 상품이다.

### 3.3. 부가가치세 減免 制度

동독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서독의 기업인은 부가가치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제도가 채택된 배경에 관해서는 위에서 서술하였다. 감면정도는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외국산 상품과 특정의 금속(수은, 은, 금, 백금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된다(세율 0%). 다른 경우에는 상품 종류에 따라 2.5%, 5%, 5.5%,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권한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를 들면 해당 상품의 반입이 베를린협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어야 한다. 동. 서독 간에는 베를린협정에 기초하지 않은 경제교류도 실시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상품이라도 부가가치세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독의 기업인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규정된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스스로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독의 기업은 사전에 자기 거주지역의 세관에 문의할 것을 서독의 상공회의소가 권장하고 있다.

## 4. 三角去來

### 4.1. 일반 원칙

동독측과 서독측과의 삼각거래는 최근 몇년 동안에 끊임없이 증가되었다. 이 삼각거래는 그 동안 동. 서독 교역내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독측과의 삼각거래를 실시하는 것은 서독의 경제적 필요성에도 부합된다. 이 삼각거래는 베를린협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상품을 동독으로 반출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되기도 하고 또 베를린협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동독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을 서독으로 반입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기도 하다.

이 삼각거래를 이용하여 서독측은 동독측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상품을 외환을 지불하는 댓가로 공급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외환은 서독의 마르크나 미국의 달러 등이 되며 베를린협정에 규정된 VE는 아니다. 만약에 이 삼각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서독 경제는 손실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3국이 동독측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상품을 서독 대신에 동독에 공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삼각거래는 이를 다시 삼각반입 거래와 삼각반출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삼각반입 거래의 경우에는 동독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서독으로 반입된다. 이 경우에 반입되는 상품은 동. 서독 교역을 통해서만 반입될 수 없거나 반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며, 또 제3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동독의 거래당사자보다 가격면에서 더 유리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다.

삼각반출 거래의 경우에는 그 원산지에 상관없이 상품이 동독으로 반출된다. 다시말하면 서독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동독으로 반출될 수 있고 프랑스나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동독으로 반출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반출되는 상품은 서독의 관세법적 의미에서 자유거래가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서독의 관세법이 그 유통을 금지하는 그런 물품이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삼각거래의 경우 동독은 서독 기업의 계약당사자는 아니다.

이 삼각거래에 관한 전문용어는 이미 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삼각거래를 하려고 하는 서독의 기업은 먼저 해당상품이 서독에서 생산통계로 쓰이는 여섯자리 숫자의 신고번호를 알아내야 한다. 이 신고번호가 있어야만 삼각무역의 대상상품이 일반적으로 허용된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확정지을 수가 있다. 이 신고번호는 동독과의 모든 삼각거래에 적용된다. 정확한 통계용 신고번호를 알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해당 상품이 새로 시장에 나타난 경우에 그러하다.

서독의 연방제조업청은 서독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신고번호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상담에 응하거나 그들이 서면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책임지고 신고번호를 알려준다. 서독의 개인이나 기업

은 또한 서독의 상공회의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고번호를 알아 낼 수도 있다.

#### 4.2. 삼각반출 거래

삼각반출 거래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허가된 것으로 하여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와 개별적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두가지가 있다. 일반 허가령 제2호의 부속문서 제1호에 수록된 상품을 거래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반출이 일반적으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 서독의 수출상은 자기의 책임하에 해당 거래를 집행하게 된다. 해당 수출상은 일반 허가령 제2호에 비추어보아 그가 행하려고 하는 삼각거래가 가능하고 허가된 것인지를 양심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상품이 서독을 원산지로 하는가,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가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송하허가의 신청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해당 상품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상품을 동독으로 수송할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송하허가서를 필요로 한다.

동독으로 반출하려고 하는 상품이 일반 허가령 제2호의 부속문서 제1호에 수록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반출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첫째 반출자는 서독의 개인이나 법인이어야 한다. 둘째 반출의 댓가로 동독측에서 상품을 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해당 상품의 반출시기, 인도시기가 계약체결 종료후 2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

다. 삼각거래의 경우 대금의 지급은 자유통화로 이루어지며 서독의 중앙은행에 개설된 소계정 1/2는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

일반 허가령 제2호의 부속문서 제1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상품을 삼각거래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서독 당국에 의해서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서독의 수출상은 자기 관할 구역내의 주정부 당국에 송하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상품 반출의 계기에 관한 해명을 주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의 한 기업의 반출위임서라든가 또는 스위스에 있는 어느 회사와의 계약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제3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보내온 위임장 또는 위탁서에는 해당 상품이 동독의 개인이나 법인을 반입자로 한다는 것이 명기 되어야 한다.

### 4.3. 삼각반입 거래

삼각반입 거래를 통하여 동독으로부터 반입하고자 하는 상품은 일반 허가령 제1호에 의하여 허가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개별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삼각거래를 통하여 서독의 개인이나 기업이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동독 상품은 제3국을 통하여 서독으로 운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상품은 동독으로부터 직접 서독으로 운반될 수 없다. 이렇게 해당 상품이 직접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수송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불법적인 거래가



자행될 것이다. 다시말하면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배풀어지는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이라든지 또는 무관세의 혜택, 농산물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는 혜택 등이 있는데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삼각거래의 경우는 동독의 상품이 반드시 제3국을 경유하여 서독으로 운반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동독의 상품을 제3국을 경유하여 서독으로 반입하기 위한 허가, 다시말하면 반입허가는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여 관계부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동기를 해명해 주는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삼각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매입 가격은 임의의 외국 화폐로 지불될 수 있다. 그러나 베를린협정에 규정한 바대로 동. 서독의 중앙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 (이 경우엔 소계정 1/2)을 사용해서 상품대금이 지급될 수는 없다.

#### 4.4. 부가가치세 減免 制度

삼각거래를 통하여 동독으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베를린협정에 의거하여 상품을 동독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稅制가 적용된다. 삼각거래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連鎖去來이다. 즉 서독의 한 기업가가 반출자가 되고 제3국의 한 기업인이 참여하며 최종적으로는 동독의 개인이나 법인이 구매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서독의 한 기업이 동. 서독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러한 세금 면제는 반출상품이 제3국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직접 동독으로 또는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동독에 이송, 운반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서독의 수출상은 이와 관련하여 자기 주거지역의 세무서와 연락을 취할 것이 요망된다. 세무서로부터 받은 서면의 설명만이 나중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 5. 仲介貿易

외국의 시장 정보에 밝고 또 독일내 교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서독의 많은 기업들이 중개무역의 방법으로 동독과 협력을 하고 있다. 이 분야는 대단히 관심있는 분야이며 권장할 만한 것이다. 중개무역을 통하여 서독의 기업이 외국의 상품을 동독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외국의 수출상보다는 더 유리한 대금지급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동독의 기업들은 점차로 서독의 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의 상품을 사들이고 있다. 서독의 중개무역업자들은 동독을 원산지로 하는 상당한 양의 상품을 사들이고 이것을 다시 중개상품으로써 제3국에 판매한다. 이 경우에 서독의 중개업자들은 외국 시장에 대한 우수한 정보를 사용하고 외국 시장에서 동독의 상품이 판매될 수 있는 기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동독과의 중개무역에는 베를린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독과의 중개무역을 할 경우에는 또 중개상품의 원산지가 문제되

지 않는다. 어떠한 종류의 상품이든지 지금 유효한 규정내에서는 거래될 수가 있다.

중개무역과 관련한 전문용어는 이미 위에서 설명하였다. 이 중개무역을 능동적인 중개무역과 수동적인 중개무역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한다. 동독과의 중개무역 거래는 서독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 허가는 일반적 형태로든지 또는 개별적 형태로든지 발급된다. 그러나 이 허가에는 해당 상품이 매각되기 전이나 해당 상품이 서독의 영토를 통과하고 있는 도중에 변화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개상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외형상으로 가공하거나 질적으로 가공하는 일, 다른 물품과 혼합하는 일, 또 그 양을 증대시키는 일 등 이다.

끝으로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개상품이 보통의 경우 서독의 과세지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상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기 전까지 또는 동독으로 반출될때까지 서독의 보세 구역내에 위치하는 과세지역에 잠정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세관원들이 판단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중개무역업자들에게는 부가가치세 취급 문제와 관련하여 미리 미리 그리고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관할 지역의 세관원들과 협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IV. 대금결제 방식

동. 서독 교역은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국가간의 교역으로 대금결제 방식에서도 자본주의 나라들 사이의 교역과는 다른 점이 있다. 서방측의 통화가 태환성이 있는데 반하여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 나라들의 통화는 오로지 국내에서의 지급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통화는 국제적으로 지급수단이 되지 못하며(불환성), 서방의 금융, 외환 시장에서도 공식적인 거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동독의 화폐는 동독의 외환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으로 반출해도 안되고 외국에서 반입해도 안된다. 그것은 순수한 국내통화에 불과하다. 동독과 서독의 통화 간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합의된 환율이나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환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불환성 통화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동유럽 나라들과 서방국가들간의 상거래는 대개의 경우 그 가격 합의가 주요 서방국가들의 통화로 표시된다. 따라서 구매가격의 지급은 달러, 마르크, 영국 파운드 등 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 동유럽 나라들이 서방측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려면, 먼저 서방측에 수출을 하여 태환성 통화를 벌어들인다면 서방측 은행과 수출업체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동유럽 나라들이 수출소득이나 차관의 범위내에서만 서방측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 동유럽 나라들은 구상무역의 방법(물물교환)으로 수입을 늘일 수도 있다.

동독과 서독 간의 환전업무는 통화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제한

성 때문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유효한 연합국의 군정 법령이 두 나라 교역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송금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두 나라 간의 지급거래는 오로지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중앙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쌍무적인 청산절차의 방법에 의해서 상품의 대금결제 이루어지고 있다. 청산결제의 당사자는 서독의 중앙은행(Deutsche Bundesbank)과 동독의 중앙은행(Staatsbank der DDR)이다.

두 중앙은행은 각각 상대방 은행 명의로 된 청산계정을 설치하고 있으며, 결제단위는 VE(Verrechnungseinheit의 약자)이다. 청산계정은 당초에는 3개의 소계정으로 다시 나뉘어 있었다. 소계정1은 하드웨어, 소계정2는 소프트웨어, 소계정3은 서비스 교역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1967년부터는 소계정1과 소계정2가 통합되어 소계정1/2(Unterkonto 1/2)란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고, 1958년에는 특별계정 S(Sonderkonto S)가 신설되었다. 특별계정 S는 현금결제를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지금까지 동독측이 긴급구매를 위하여 가끔 사용한 적이 있다. 특별계정 S를 제외한 소계정은 각기 동, 서독 쌍방이 합의한 한도 내에서 차월(자동대출)이 가능하다. 차월은 무이자이며, 어느 일방의 한도액이 消盡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해당 소계정상의 지분을 정지시킬 수 있다. 서독측이 동독측에 공여하고 있는 자동대출의 재원은 서독 중앙은행의 차관이다.

동, 서독 기업체 간의 모든 반입계약과 반출계약은 VE에 기초하여 체결된다. VE는 장부상의 통화에 불과한 것이나 실제로는

서독 마르크의 별명일 뿐이다. 동독측은 명분상의 이유로 해서 동. 서독 교역의 화폐단위가 서독 마르크와 같은 명칭을 가져서는 안 되고 중립적인 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동. 서독 교역의 1VE가 1 서독 마르크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 장부상의 통화가 무제한으로 사용되는 교환수단은 아니다. 동독측이 서독에 물품을 판매하면 서독의 중앙은행의 해당 계정에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독 소유의 VE로 기재되지만, 이 VE는 태환성있는 서방측 통화로 교환될 수도 없고 서방의 다른 나라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수도 없다. 즉 동독측은 벌어들인 VE를 오직 서독내에서만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동. 서독 교역은 그 성격상 두 나라 국민경제 간에 이루어지는 엄격히 쌍무적인 교환관계이다. 엄격히 쌍무적인 교환관계란 경제력이 강한 쪽(서독)의 판매증가는 중. 장기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쪽(동독)의 수출가능성에 적응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물론 강한 쪽이 약한 쪽에게 무제한으로 차관을 공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관을 무제한으로 공여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동. 서독 교역은 그 성격상 원칙적으로 동독이 서독에 수출한 만큼 서독도 동독으로 수출할 수 밖에 없다.

동독과 서독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자기 나라에 반출한 만큼 상대방에 반출할 수 없는 사태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동. 서독 교역은 당장 감소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 서독 쌍방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자동대출을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를 스윙(SWING)이라고 하며, 이

미 베를린협정의 前身인 프랑크푸르트협정 (1949년 10월 8일 체결)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스윙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동. 서독 교역 쌍방은 어느 시기에 상호 지급거래가 원만하게 실현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자동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운신의 폭을 갖게 되었다. 즉 어느 일방이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물품공급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 자동대출을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모든 스윙 합의에는 상한선이 설정되고 있다. 교역 쌍방이 무제한으로 자동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59년 이래 기본 상한선은 2억 VE이다. 이 금액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동. 서독 쌍방은 대체로 5년마다 특별 스윙한도를 한시적으로 책정하여 왔다. 예를 들면 1976년부터 1982년까지는 스윙한도가 8억5천만 VE에 달하였다. 합의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스윙한도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스윙한도는 기본 상한선인 2억 VE로 되돌아간다. 현재 합의된 스윙한도, 즉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스윙한도는 8억5천만 VE이다.

이 자동대출은 무이자이며 이를 사용하는 측은 주로 동독이다. 즉 서독측이 동독측에게 무이자 대출을 보장하여 주는 방법으로 경제적 혜택을 베푸는 셈이다. 그러나 서독측은 스윙의 상한선과 공여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난 35년간 상업적 내지는 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도 입각하여 동독측과의 협상에 임하였다. 예를 들면 서독측은 동독 주민들에게 동독 당국이 서방측 의미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영향력을 행

사하는 수단으로 스윙한도 책정을 이용하기도 하였고 서독 주민들에게 동독 방문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였다.

동독측에 의한 스윙 사용 실적은 동독측이 서독에서 구매한 상품량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고 특히 1984년부터는 격감하였다. 동독이 1970년부터 1981년 사이에 서독에서 구매한 상품가격 전체의 12% 내지 18%가 스윙으로 결제되었고 1984년부터 1986년까지에는 겨우 2% 내지 3%만이 스윙으로 지급되었다. 또 서독측이 책정한 스윙 한도를 100으로 잡을 때 동독측은 1970년부터 1981년 사이에 80% 내지는 95%를 사용하였으나, 1984년부터 1986년까지에는 겨우 22% 내지 31%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최근에 와서 동독측이 서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 V. 동. 서독 교역과 借款制度

동독이 서독에서 차관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스윙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동독도 서독으로부터 판매자차관 (supplier credit)이나 재정차관 (financial credit)을 얻을 수 있다. 동독측은 이러한 차관을 가지고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분할하여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선금지급과 중도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하나의 공장 전체를 사들일 수도 있다.

동. 서독 간의 지급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조정 권한이 1957년에 서독의 중앙은행으로 이양되었다. 이렇게 관할권은 이양되었지만, 이 업무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연합국측이 제정한 외환관리법으로 이것이 아직도 유효하다. 모든 차관은 특별히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독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히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일반 허가령 (Erlass Allgemeiner Genehmigungen)과 지급거래 실시에 관한 공고문들에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1983년과 1984년의 두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서독의 중앙은행은 對東獨 재정차관이 동. 서독 교역을 촉진시키거나 중개무역거래의 종결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수십년 지속되어 왔는데, 재정차관 공여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서독 상품의 동독내에서 판매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동독을 경제적으로 서독에 단단히 묶어 두기 위함이다. 서

독의 중앙은행은 동독측에 차관을 허가할 때 연방정부와 긴밀히 상의하며, 연방정부는 중앙은행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서독측이 동독측에 제공하는 차관은 원칙적으로 附帶條件이 붙은 것이다. 차관 공여는 공장 전체나 공장 일부의 구입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원료, 반제품, 부품 등의 중간재 구입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개별적 민간은행, 은행차관단, 기타의 금융기관이 서독의 차관제공자로 되며, 이 차관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언제나 동독의 수출입은행이다.

1983년 7월과 1년 후인 1984년 7월에 서독 정부와 서독 중앙은행은 예외적으로 서독의 은행차관단이 2개의 부대조건 없는 수십억 VE에 달하는 차관을 동독측에 제공하기로 한 결정을 허락하였다. 硬貨가 동. 서독 국경을 넘어서 직접 이전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주요 서독은행들의 룩셈부르크 지점을 통하여 차관 인도가 이루어졌다. 물론 2가지 차관에 대해서는 서독 정부가 차관 공여 은행들에게 채무보증을 썼다. 이 차관 공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동독측은 여행제한을 완화시키고, 동. 서독 간의 여객 내왕을 적극 지원하며, 국경 통제를 용이하게 하며, 우편 및 소포 통제를 대폭 줄이고, 전화통화를 개선하며, 개별적 경우 인도적 원조를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고 이행하였다.

동독의 경우나 서독의 경우 차관 도입의 현황과 차관 제공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금융 이전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동독의 경우 서독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대출금의 송금은 동독 중앙은행의 계좌를 통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계좌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서독의 경우도 동독 관련 금융 이전은 예외없이 중앙은행에 특별히 설치된 청산계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든 차관 제공자는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 결과 서독의 중앙은행은 동독측이 서독측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현황을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다.

## VI. 동. 서독 교역과 보증제도

서독정부는 서독에 주거를 둔 기업에 대하여 장기거래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해당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증을 서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증의 종류에는 반출보증과 지급보증이 있고, 일정한 조건하의 추가보증이 있다. 여기서는 반출보증과 지급보증에 관해서만 설명한다.

정부가 반출 및 지급보증을 서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에 한한다.

- (1) 계약당시는 서독에 주거를 둔 기업과 동독에 주거를 둔 기업이어야 한다.
- (2) 투자재나 투자에 적합한 물자를 동독으로 반출하는 내용의 계약이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투자재 생산에 쓰이지 않고 가공을 한 이후에야 투자재로 轉變되는 물자의 반출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또 계약상의 합의 사항에는 (a) 계약체결 후 빨라도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물품반출이나 용역이 이행되어야 한다든지 또는 물품반출기간이나 용역제공 기간이 계약체결 후 1년을 초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거나 (b) 180일이 초과하는 대금지급 기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외에 몇가지 조건이 더 첨가된다.

보증을 받은 기업은 서독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의 결과나, 서독측이 취하지 않은 정치적 조치나 반출제한을 내

용으로 하는 정치적 조치의 결과로 해당기업이 물품반출이나 용역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 반출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나 조치로 인하여 서독에 주거를 둔 기업간에 체결된 동일 종류의 물품계약이나 용역계약 역시 이행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된다. 또 보증을 받은 기업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예상하고 합의한 대금지급 기한 만료 6개월 후에도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들이 추후에 대금지급 기한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추후로 합의한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보증금액의 기초는 반출가격 전액이다. 반출보증의 경우, 매매계약서나 용역계약서 상에 합의한 대금과 부대비용 (이 부대비용은 계산서에 별도로 표기될 수 있어야 함)이 반출가격으로 된다. 지급보증의 경우, 반출된 상품과 제공된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서에 합의된대로 청구할 수 있는 대금과 반출보증의 경우와 동일한 부대비용이 반출가격으로 된다. 차관을 제공한 경우 계약서 상에 합의한 차관이자도 해당기업이 신청하면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보증에 포함시킬 수 있다.

손해배상 신청은 보증요건의 발생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은 신청서 제출 6개월 이내에 확정되고 손해배상금은 그 액수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지급된다. 그러나 반출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 기업이 계약서에 명기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 이전에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증신청서는 연방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Treuarbeit

Aktiengesellschaft (Duesseldorf 소재)에 일정한 양식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신청에 대해서는 서독의 연방경제장관과 연방재무장관이 결정권을 갖는다. 결정의 결과는 위의 회사가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VII. 동. 서독 경제교류의 특수형태

### 1. 거래를 트는 일

동독과 같이 중앙 계획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와 거래를 트는 것은 일련의 문제를 수반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라들이 제3국과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리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대개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로서, 수입상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동독의 경우 국가기관인 대외무역공사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동독과 접촉을 최초로 이루기 위해서는 동독의 대외무역공사를 통하거나 뒤셀도르프 주재 동독 상설 대표부의 무역정책부를 통하여야 한다. 산업박람회나 전람회에서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산업박람회로는 라이프치히 산업박람회가 있고 또 쾰른, 뮌헨에서도 박람회가 개최된다.

동독측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정확한 대금지급 방식이 합의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청산결제의 수단인 VE로 할것인지, 자유통화로 할것인지 하는 점이다. 둘째 계약상의 합의사항,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금지급 기한이 보통 상업거래에서의 관행과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세째 본 계약에 따르는 副次的인 약속이 서면으로 확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副次的인 합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두 당사자 간에 대리인이 관여하는 문제라든지 또 구입물품에 대해서 그 대금으로서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네째로 주의할 사항은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해당 상품가격에 이미 算入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 2. 라이프치히 산업박람회

라이프치히 산업박람회는 약 8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에 있어서 출품자의 수가 49개국에서 6천명 정도가 되며 이 중에서 약 550개의 서독 기업이 참가한다. 그리고 박람회 면적이 약 30만 3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가장 중요한 국제 박람회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박람회는 1년에 두 번, 즉 3월과 9월에 개최된다. 농산품이 3월 박람회와 9월 박람회에 균등하게 출품된다.

이 산업박람회와 관련된 서비스 문제, 다시말하면 展示臺를 임대하는 문제라든가 展示臺를 세우고 장식하는 문제, 수공업자와 보조원을 소개하는 문제, 박람회 카탈로그를 발행하는 문제, 박람회 잡지를 발행하는 문제, 기타의 문제는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라이프치히 박람회 사무소가 담당한다. 이 라이프치히 박람회 사무소는 서독에 그 지부를 두고 있다.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을 동독으로 수송하는 것은 그 해당 상품이 일반 허가령 제2호의 부속문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가되어 있다. 이 경우 출품되는 상품에는 일



반 허가령 제2호에 규정된 송하허가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통계를 잡기 위한 신고는 이 경우 필요하지 않다. 개별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을 라이프치히 박람회 수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송하허가서가 필요하다. 박람회에 출품된 물품은 적절한 시기가 지나면 다시 서독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출품된 물품이 라이프치히에서 매각되면 베를린협정에 규정된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상품이 일반허가품일 경우에는 일반 허가령 제2호에 따르는 신고를 16일 이내에 서독의 연방제조업청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상품이 개별허가품일 경우에는 대금지급 거래를 위해서 송하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독 상품이 아닌 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동독의 대외무역성의 동의서가 요구된다.

출품된 상품이 박람회 비용이라든지 전람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한, 출품된 상품의 매각대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박람회 비용이 소계정3을 통해서 지불되어야 한다. 展示臺 보조원이라든가 수공업자 등과 같이 자연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용역에 대한 代價 지급은 역시 현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展示臺를 장식하기 위한 대상물이라든가, 광고를 위해서 또는 전시품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품은 그것이 일반 허가령 제2호의 상품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한 일반허가품으로 인정되어 이송될 수 있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장이나 선하증권 등만이 필요하다. 동독측 세관의 규칙에 주의하여야 한다.

### 3. 상업목적의 동독여행

서독의 기업인이 사업 목적으로 동독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급수단을 가지고 가는 것이 허락된다. 이때에 지참하고 간 지급수단, 즉 화폐로 숙박료, 식비, 여비, 도로 사용료 등 기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인이 동독 체류중에 개인적 소비를 위해서 사들인 물품은 다시 서독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물품 가격이 2천 서독 마르크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천 마르크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입허가가 필요하다. 동독으로 가지고 들어간 화폐는 사업상의 교제와 손님 접대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으로도 지불될 수가 있다. 현찰 이외의 특정한 신용카드의 사용도 또한 허용된다.

## VIII. 서독측의 국내시장 및 EC 시장 보호 조치

### 1. 반 덤핑제도

만약 동독측이 그들 상품가격을 서독내의 유사한 상품가격보다 대폭 낮게 책정하여 서독 시장에 공급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에 의거 동독측이 덤핑가격으로 서독내의 새로운 시장을 정복하고자 하거나 잃어버린 과거 시장점유 몫을 되찾으려고 시도한다는 혐의가 발생할 경우, 서독측은 가격조사절차 (Preisprüfungsverfahren)를 개시하여 동독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의 법적근거는 베를린 협정 제2조 제2항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가격합의가 서독과 동독 또는 어느 일방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과 용역의 반출, 반입허가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장교란에 대한 대응조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독측은 특별규정을 만들었는 바, 이에 의하면 동독으로부터의 반입이 가격이나 수량면에서 동일 종류의 상품이나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서독내의 어느 한 생산부문에 현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국내 경제부문의 정당한 보호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고 동독으로부터의 반입 상품가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현저한 시장교란이 발생하였고 덤핑혐의가 확인될 수 있으면, 서독의 해당기관은 응분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독측이 사용할 수 있는 교역정책적 보호조치로는 동독측 공급관행

에 대한 국가적 관찰의 강화, 동독측에 대한 서독정부의 공식경고, 하자있는 반입의 금지 등이 있다.

가격조사절차는 덤핑행위로 피해를 받은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연방제조업청 (Bundesamt fuer gewerbliche Wirtschaft) 및 연방식품·임업청 (Bundesamt fuer Ernaehrung und Forstwirtschaft)에 신청할 수도 있고 두 기관이 恣意로 제소할 수도 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가격조사절차가 개시될 경우, 동독의 국영무역회사들이 개입하여 제시가격을 수정하는 것이 상례였다.

동. 서독 교역은 서독측의 입장에서 보면 대외무역이 아니며 유럽공동체의 다른 회원국들도 이를 인정하였다. 그 결과 동독의 물품은 공산품의 경우에는 무관세로, 농산품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물지 않고 서독내로 반입된다. 유럽공동체의 일부 회원국들은 이러한 특별 경제관계가 자국의 무역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었다. 만약 유럽공동체측이 동독의 무역공사에 대한 반 덤핑절차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유럽공동체 명의로 시장교란에 대한 대응조치가 결의되면 서독정부는 이 대응조치를 지지한다. 이러한 식으로 서독정부는 유럽공동체가 특정의 동독상품에 대하여 반 덤핑관세를 결의하면 해당상품이 서독시장으로 못 들어 오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공동체의 대응조치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 2. 민감한 물품의 반입제한 제도

"민감한 재화"의 범주에 해당하는 상품집단의 경우, 동독으로부터의 반입을 정부가 통제하고 감소시킬 것을 EC의 회원국들은 물론 서독의 有關 업계도 기대하고 있다. "민감한 재화"란 자국내에서나 전세계적으로 현저한 과잉생산 상태에 있고 낮아진 수요에 맞추기 위한 생산감소와 적응조치가 고통스러운 경제축소 과정을 가져오고 공급측면에서는 현저한 산업구조 개편 문제를 유발시키는 생산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서독과 EC 시장에 과잉공급되어 서유럽의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판매부진과 실업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외부로부터의 반입을 제한함으로써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실제로 "민감한 재화"에 속하는 것은 첫째로 농산물과 가공식품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물량제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는 EC 회원국들의 상업이익을 고려한 결과이다. 가격기준으로 계산하여 80년대에 동독에서 반입되는 농산물의 80% 내지 90%가 물량제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반입제한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매년 새로이 확정된다. 반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물품이 반입가능한가 하는 것은 서독 당국의 공고를 통하여 알려진다. 할당량의 크기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은 수요의 변화와 국내시장의 공급 상황이다. 예를들면 EC 내의 작황이 흉작일 경우에는 식품할당량은 증가하고 반대로 풍작일 경우에는 감소한다. 서독내의 판매상들은 동독상품

에 대한 새로운 판매가능성과 높은 수익성이 보이면 곧 할당량 증가를 요구하게 된다. 반입량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동독과 이윤추구에 여념이 없는 서독의 자본주의 기업체는 이 점에 있어서 돈독한 동맹을 맺고 있는 셈이다.

또 제조업 부문의 몇가지 업종이 "민감한 재화"에 속한다. 무엇보다 철강제품, 섬유, 의류, 요업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석유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중에서도 물량제한이 가장 강한 품목은 철강제품과 의류이다. 이 두 가지 상품집단에 대한 반입 제한은, EC 회원국들의 상업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서독내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업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서독의 사양산업이 상대적으로 실업율이 높고, 구조적으로 허약한 지방에 위치하여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분쟁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독 상품에 대한 반입 제한 조치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서독측의 반입제한 조치에 대하여 동독측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일방적 차별대우라고 비난하고 있다. EC측이 인위적으로 장애를 조성함으로써 상호경제협력이사회(COMECON) 회원국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상당하는 수출을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코메콘 측에서도 EC 상품수입을 크게 줄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 IX. 감독 및 처벌규정

동. 서독 교역과 관련된 제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서독의 관계부처와 중앙은행은 서면진술이나 구두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동. 서독 교역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의 법적 근거는 규정법 제53호 제3조이고 감사시행 세칙은 연방 재무성이 공포하였다. 감사의 대상은 서독에 주거를 갖거나 통상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자연인과 서독에 본점이나 주거를 갖는 법인이다. 법인의 경우 그 본점이 서독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서독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한 감사의 대상이 된다.

감사기관은 각 주정부 내의 재무담당부처와 중앙은행이다. 연방제조업청과 연방식품. 임업청은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감사의 대상으로 된 자연인이나 법인은 감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감사가 종결 되고나서 사실 확인에 관한 결론적 논의가 필요하거나 감사를 받은 기업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최종 면담이 이루어진다. 감사를 받은 기업은 감사보고서의 사본 1부를 받게 된다.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事案의 경중에 따라서 형사처벌, 과태료 징수, 경고로 나뉘어 진다.

## 〈참 고 문 헌〉

AUTORENKOLLEKTIV unter Leitung von Eugen Faude,  
Gerhard Grote und Christa

Luft : Sozialistische Außenwirtschaft, Berlin  
(Ost) 1976

AUTORENKOLLEKTIV unter Leitung von Gerhard Pflücke :  
Wirtschafts- und Außenwirtschaftsrecht  
für Ökonomen, 2., Überarb. Auflage,  
Berlin (Ost) 1986

BEHRENDT, Willy : Probleme der derzeitigen Kontingentierungs-  
verfahren im innerdeutschen Handel, aufgezeigt  
am Beispiel der Textilbezüge. Edition  
Meyn, Heidelberg 1980

BOPP, Helmut : Wirtschaftsverkehr mit der DDR, Baden-Baden  
1983

BUCK, Hansjoerg F. : Der innerdeutsche Handel - Bedeutung,  
Rechtsgrundlagen, Geschichte, Organisa-  
tion, Entwicklung und Probleme und poli-  
tisch-ökonomischer Nutzen, Sonderdru-  
ckaus : Innerdeutsche Rechtsbeziehungen,  
Schriftenreihe der Deutschen Richterakade-  
mie, Band 4, Juristischer Verlag C. F. Mu-



eller, Heidelberg 1988

DAHLMANN, Heinz :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Interzonenhandels nachdem Zweiten Weltkrieg, Diss. o.O., o.J. (koeln 1954)

DIETSCH, Ulrich und HUENNEKENS, Heinz : Umsatzstererpraxis im Waren-und Dienstleistungsverkehr mit der DDR, Achim 1986

EHLERMANN, Claus—Dieter ; KUPPER, Siegfried ; LAMBRECHT, Horst ; OLLIG, Gerhard : Handelspartner DDR—Innerdeutsche Wirtschaftsbeziehungen, Nomos Verlagsgesellschaft, Schriftenreihe EuropaeischeWirtschaft, B d. 76, Baden—Baden 1975

FRYDECKY, Herbert : Ratgeber fuer den innerdeutschen Handel, 2. Aufl., Deutscher Sparkassenverlag, Stuttgart 1972

KLEINDIENST, Willi : Abwicklung und Praxis der Handelsbeziehungen zurDDR, in : Erik Boettcher (Hrsg.), Wirtschaftsbeziehungen mit dem Osten, Verlag Kohlhammer, Stuttgart 1971, S. 61 ff.

KLEINDIENST, Willi : Aktuelle Rechtsfragen des innerdeutschen Handels,(Beitraege zum Internationalen

Wirtschaftsrecht und Atomgesetz, Bd. 3/  
Heft 2), Goettingen 1974

KOERNER, Klaus : Aktuelle Rechtsfragen des innerdeutschen Handels, Goettingen 1974

NAKAH, D. : Die Gestaltung der Außenhandelstätigkeit der DDR zur Abwehr des imperialistischen Wirtschaftskrieges der BRD gegen die DDR in den Jahren 1955 bis 1961, Diss., Berlin (Ost) 1982

NAKATH, D. : Zur Geschichte der Handelsbeziehungen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in der Endphase der Übergangsperiode 1958 bis 1961. Die Rolle des Handels bei der Zuspitzung des imperialistischen Wirtschaftskrieges gegen die DDR, in : Jahrbuch fuer Geschichte, Berlin (Ost) 1984

PLOETZ, Peter und RICHERT, Raimar : DDR – Transit ueber Hamburg (Situation, Bestimmungsgruende, Perspektiven des Seetransitverkehrs der DDR ueber den Hamburger Hafen), Veroeffentlichungen des HWWA – 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 – Hamburg, Hamburg 1983

STOECHER : Josef : Ich komme mit der DDR ins Geschaef – Der Warenhandel mit der DDR, hrsg. von d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 fuer Muenchen und Oberbayern, IHK – Schriftenreihe, Bd. 7, Muenchen 1986

TIMM, Reingard : Ost – West – Handel. Orientierungshilfen fuer die Praxis, Verlag Haufe, Freiburg i. B. 1979

TOEBEN, Thomas : Die Besteuerung des deutsch – deutschen Wirtschaftsverkehrs, Handbuch, Baden – Baden  
1987

O. V. : Korea – Hemden via DDR in die Bundesrepublik, in : Sueddeutsche Zeitung vom 8. September 1978



동·서독 교역의 실무절차에 관한연구

1989년 12월 16일 인쇄

1989년 12월 18일 발행

발행처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전화	720-2426,2143
연구책임	김재경
인쇄처	삼진인쇄(주)

국통조 89-11-107

(비매품)

